

Deloitte.

세무 및 관세 뉴스

2024년 2월



주목할 만한 사항

조세행정

- 세무 Desk-감사를 위한 세금 신고 서류 선택 시 위험 관리 적용 절차

법인소득세 ("CIT")

- 개인 또는 가족사업자에 지급한 주택임대료에 대한 CIT 손금산입 비용 지원서류
- 주택, 인프라, 토지 건축 공사에 대한 임대소득을 제외하고 부동산 양도 소득은 CIT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음
- 인식된 수익에 해당 아파트 관리 비용이 accrual 가능함

간접세 ("VAT")

- 규격 및 품질 문제로 인한 판매 반품에 대해 발행된 계산서를 감소 조정하거나 대체하려면 반품 계산서를 발행해야함
- 합병 시 VAT 환급

개인소득세 ("PIT")

- 외국인은 베트남에서 근무계약 종료 후 지급받은 소득은 PIT 20% 부과됨
- 근로계약이 없는 경우 개인 중개인이 세금 10%를 납부해야 함
-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면세된 외국인은 첫 번째 세금신고 시 통보해야 함

외국인계약사제 ("FCWT")

- Google의 광고 활동에 대한 베트남 회사의 세금계산서 신고

무역 및 관세

- 베트남-유라시아 경제연합 자유무역협정 ("VNEAEUFTA") 및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지대("AANZFTA")에 따른 일부의 원산지 규정 수정보완
- 세관업무에 위험관리 규정 수정보완
- ASEAN-인도 상품 무역 협정("AITIGA")에 따른 AI 양식으로 된 종이 C/O 지속적인 적용
- 기업이 수출가공기업 (" EPE ")에서 Non-EPE로 전환한 시 적용 세금정책
- 외주 가공 계약에 따라 국내 기업이 EPE로 전달하는 물품에 대한 통관 및 수입관세 환급절차에 대한 안내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Transfer Pricing
Firm of the Year

Tax Firm
of the Year



조세행정 신규 규정

세무 Desk-감사를 위한 세금 신고 서류 선택 시 위험 관리 적용 절차

세무총국은 세무당국 (세무총국, 세무국, 세무지국을 포함)에게 VAT, CIT, 특별소비세 (“SCT”)에 대한 세금 신고 서류를 선택하여 세무당국에서 Desk-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위험 관리를 적용하는 절차에 대해 안내할 목적으로 제 98/QD-TCT호 결정을 발표하였다. 절차는 다음 단계가 포함된다:

- 정보 수집 및 처리
- 세금위험이 있는 세금신고서류를 선택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하고 사용함
- 세금신고 서류의 위험 수준 분류 결과를 평가, 분류 및 처리
- 세금신고 서류기준으로 고위험 납세자 목록을 처리
- 세금신고 서류 선택 시 위험 관리 기준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해당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솔루션을 제안함

딜로이트의 본 신규 규정에 관한 관찰:

- 제 98/QD-TCT 호 결정의 발표는 최근연도에 세무당국에서 감사를 위한 세금 신고 서류 선택에 현대화를 강화하는 관점과 추세를 강조하고 허위신고나 탈세행위가 있는 납세자를 발견, 예방, 신속히 처리하는 능력을 향상하여 조세행정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 또한 이 절차는 세무당국에서 Desk-감사를 하기 위해 위험신호가 있는 VAT, CIT 및 SCT 신고 서류 선택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 및 평가하는 세무당국 시스템의 일관성을 입증한다.
- 세무감사의 양적·질적 강화는 납세자 사업장에서 세무감사로 전환 가능성을 높이거나 세무감사 구축의 기반이 되거나 또는 다음 납세자를 위한 위험 관리 원칙에 따라 조사/감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로 사용된다: (i) 세무당국에 의해 통지된 정보 및 문서에 따라 설명하지 않거나 제공하지 않음; (ii) 설명했거나 추가 세금신고서류를 제출했지만 신고된 세액이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음.

(세무총국의 2024년 1월 26일 제98/QD-TCT호 결정)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법인소득세 (“CIT”) 지침 문서

개인 또는 가족사업자에 지급한 주택임대료에 대한 CIT 손금산입 비용 지원서류

회사가 개인 또는 가족사업자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족사업자 또는 개인이 부동산 임대 시 전자계산서를 사용할 수 없다.

CIT 손금산입 비용에 대한 지원서류는 제96/2015/TT-BTC호 시행규칙 제4조 2항 2.5항에 따른 주택 임대 계약서와 임대료 지급 증빙서류이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4년 1월 24일 제4852/CTHN-TTHT호 OL)

주택, 인프라, 토지 건축 공사에 대한 임대소득을 제외하고 부동산 양도 소득은 CIT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음

회사의 투자 프로젝트가 부동산 사업, 소유자, 사용자 또는 임차인의 토지사용권 사용과 관련 사업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부동산 양도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은 기업이 토지에 있는 주택, 기반시설, 인프라만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CIT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

(세무총국의 2024년 1월 19일 제261/TCT-CS호 OL)

인식된 수익에 해당 아파트 관리 비용이 accrual 가능함

회사가 계약에 따른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하는 경우 매출수익을 인식했지만 해당 비용이 충분히 발생하지 않으면 제96/2015/TT-BTC호 시행규칙 제4조 2항 2.20점에 따라 인식된 매출수익에 해당한 비용을 accrual 가능하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4년 1월 18일 제3703/CTHN-TTHT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간접세 지침 문서

규격 및 품질 문제로 인한 판매 반품에 대해 발행된 계산서를 감소 조정하거나 대체하려면 반품 계산서를 발행해야함

판매자가 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했지만 상품이 규격이나 품질을 준수하지 않음을 발견되어서 일부 또는 전체의 상품이 반품되어야 할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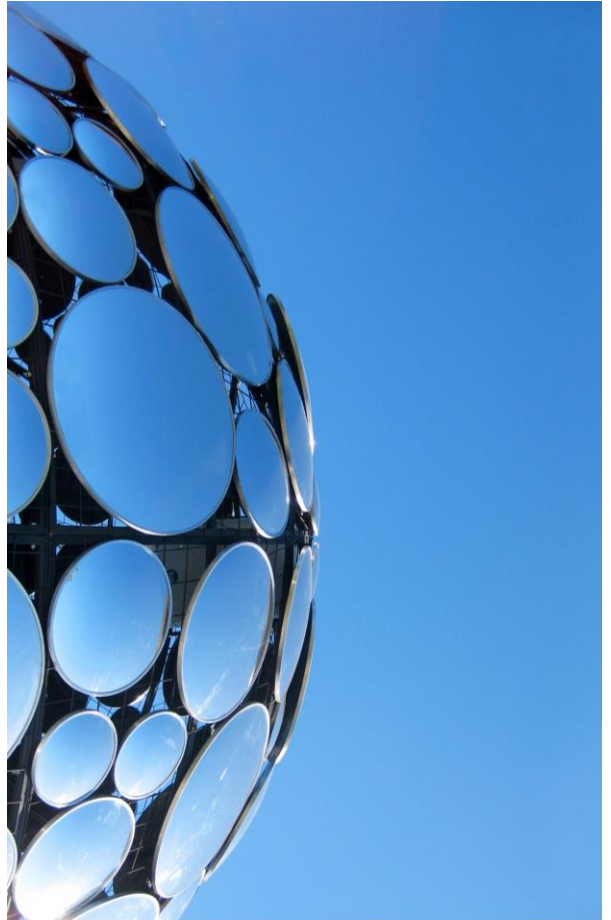
- 판매자는 기존 계산서를 감소 조정하거나 대체하기 위해 반품에 대한 계산서를 발행한다.
- 판매자와 구매자는 제123/2020/ND-CP호 시행령 제 4조 1항에 따라 반품 합의서를 준비한다.
- 판매자는 제38/2019/QH14호 조세행정법 제47조 및 제126/2020/ND-CP호 시행령 제7조 4항에 따라 세금 신고서를 수정해야 한다.

(빈증성 세무국의 2024년 1월 26일 제1909/CTBDU-TTHT호 OL)

합병 시 VAT 환급

합병된 회사가 공제방식으로 VAT를 신고하고 매입 VAT 금액이 완전히 off-set 되지 않을 경우, 해당 회사는 제130/2016/TT-BTC 호 시행규칙 제1조에 따라 합병 시 해당 금액에 대한 VAT 환급이 가능하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4년 1월 22일 제4267/CTHN-TTHT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개인소득세 ("PIT") 지침문서

외국인은 베트남에서 근무계약 종료 후 지급받은 소득은 PIT 20% 부과됨

외국인근로자가 베트남에서 근무 계약 종료 시 베트남을 떠나기 전에 PIT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회사와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베트남을 떠나기 전에 PIT 확정신고를 완료한 외국인근로자가 회사한테서 PIT 과세소득을 지급 받은 경우 비거주자로 PIT 20% 적용된다.

(꽝남성 세무국의 2024년 1월 29일 제 885/CTQNA-TTHT호 OL)

근로계약이 없는 경우 개인 중개인이 세금 10%를 납부해야 함.

회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3개월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개인 (비영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경우 개인 중개인이 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PIT가 부과된다.

회사는 각번 200만동이상으로 개인에게 지급한 시 PIT 10%를 공제할 책임이 있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4년 1월 24일 제4850/CTHN-TTHT호 OL)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면세된 외국인은 첫 번째 세금신고 시 통보해야 함

비거주자 외국인이 이중과세방지협정 ("DTA")에 따라 세금 면제/감면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DTA에 따른 세금 면제/감면 통지서류 (제01/HTQT호 양식 및 첨부 서류)를 첫 번째 세금신고 서류 (제02/KK-TNCN호 양식)와 같이 제출해야 한다.

(세무총국의 2024년 1월 3일 제17/TCT-DNNCN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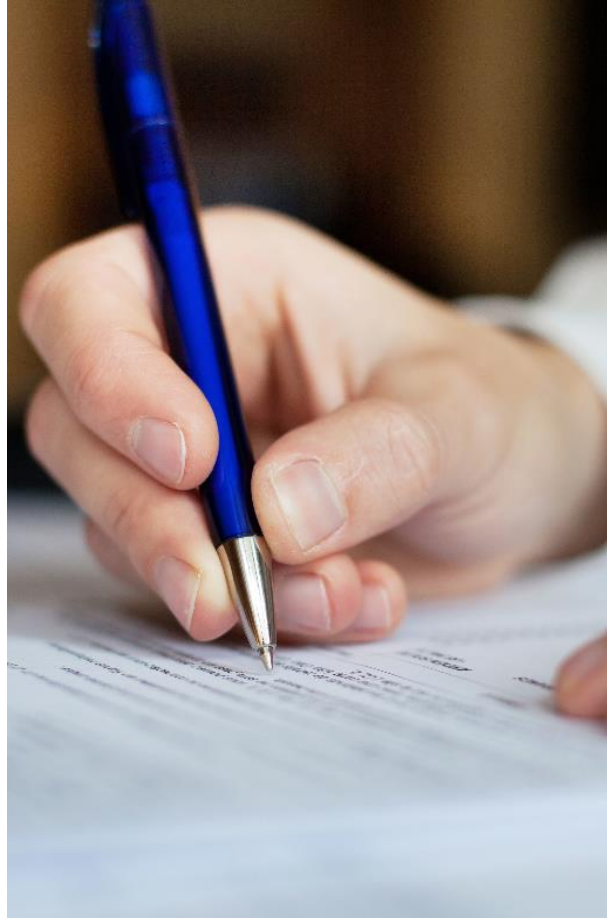
외국인계약자세 ("FCWT") 지침 문서

Google의 광고 활동에 대한 베트남 회사의 세금계산서 신고

베트남 회사가 외국 공급업체의 광고 활동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 VAT: Google Asia Pacific Pte. Ltd. (Google)에 의해 발행된 인보이스는 공제방식으로 VAT를 신고하는 회사의 VAT 인보이스가 아니므로 규정에 따른 매입 VAT 공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CIT: 2018년 8월 15일 제3149/TCT-CS 호 OL를 참조하여 Facebook, Google에 지불한 광고비용은 아래 규정조건을 충족하면 손금 산입 가능하다:
 - ✓ 회사의 사업활동과 관련됨
 - ✓ 회사명, 주소, 세금코드가 기술된 적격증빙서류가 있음 (판매자가 인보이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FCWT 신고 및 납부 증명서가 필요함)
 - ✓ VAT규정에 따른 결제증빙서류가 있음
- 디지털 플랫폼에서 전자 상거래 활동하고 베트남에서 세금 등록한 외국 공급업체를 확인하기 위해: 회사가 외국 공급업체를 위한 전자 정보 포털 (<https://etaxvn.gdt.gov.vn/>)에 접근하여 외국 공급업체의 세금 등록 상태를 조회할 수 있다.

(세무총국의 2024년 1월 24일 제296/TCT-CS 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무역 & 관세 지침 문서

베트남-유라시아 경제연합 자유무역 협정 ("VNEAEUFTA") 및 아세안-호주 -뉴질랜드 자유무역지대("AANZFTA") 에 따른 일부의 원산지 규정 수정보완

2024년 1월 15일, 산업통상부가 VNEAEUFTA 및 AANZFTA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일부 원산지 규정을 수정 및 보완하는 제 01/2024/TT-BCT호 시행규칙 ("제01호 시행규칙") 및 제02/2024/TT-BCT호 시행규칙 ("제02호 시행규칙")을 발행했다, 따라서:

- HS 2022 버전을 적용하는 신제품별 규칙 ("PSR") 발행;
- 원산지 증명서 ("C/O")의 인증 및 검사절차 규정;
- 2023년 10월 1일부터 인도된 수출 발송물에 대하여 HS 2022 버전을 적용하는 PSR에 따라 EAV양식으로 C/O소급 발행 규정;
- 세관절차 진행 시 HS 2022를 적용하는 PSR에 따라 2023년 10월 01일부터 발행된 EAV 양식인 C/O허락 규정.

제01호 시행규칙 및 제02호 시행규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발효된다.

(산업통상부의 2024년 1월 15일 제 01/2024/TT-BCT 호 시행규칙 및 제02/2024/TT-BCT호 시행규칙)

세관업무에 위험관리 규정 수정보완

2024년 1월 29일, 재무부가 세관업무에 위험관리에 관한 제81/2019/TT-BTC호 시행규칙 ("제81호 시행규칙")을 수정 및 보완하는 제 06/2024/TT-BTC호 시행규칙 ("제06호 시행규칙")을 발행했다. 주목할 만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조직/개인의 관세 준수 수준 평가 기간에 대한 명확한 설명 제공:** 관세당국은 평가일 전 연속 365일 이내에 수입, 수출 및 출입국 활동있는 관세 신고자의 법규정 준수상황을 평가하여 준수수준을 분류한다.
- **5레벨의 관세 규정 준수수준 분류 변경:**
 - ✓ 레벨 1 - AEO (수출입안전 관리 우수업체);
 - ✓ 레벨 2 - 매우 높은 준수
 - ✓ 레벨 3 - 높은 준수
 - ✓ 레벨 4 - 평균 준수
 - ✓ 레벨 5 - 비준수
- **규정 준수 수준을 분류하기 위한 기준을 변경**
- **위험 수준에 따라, 특히 면세/ 비과세 상품에 대한 스크랩 및 폐기물 폐기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규정을 추가:** 직접 감독 또는 기술 장비로 감독
- 제81호 시행규칙의 일부 문구, 조항 및 부록을 수정, 보완 및 폐지함

제06호 시행규칙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 관세규정 준수수준 업데이트와 관련된 규정은 2025년 7월 15일부터 정용된다.

(재무부의 2024년 1월 29일 제06/2024/TT-BTC호 시행규칙)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무역 & 관세 지침 문서

ASEAN-인도 상품 무역 협정 ("AITIGA")에 따른 AI 양식으로 된 종이 C/O 지속적인 적용

베트남 수출품에 대한 AITIGA에 따른 AI 양식으로 된 종이 C/O의 발급은 다음과 같이 안내됩니다:

- C/O 발급 기관은 인도 관세당국의 요청에 따라 AITIGA 성원국에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 AI 양식으로 된 종이 C/O를 계속 발행한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AI 양식으로 된 전자 C/O를 발행된 발송물의 경우, C/O 발급 기관은 서명날인된 종이 C/O를 재발행해야 한다.
- AI 양식으로 된 전자의 발급은 AITIGA 실행위원회 회의 후 수출입국 (산업통상부 산하)에서 추가 통보할 예정이다.

(수출입국 (산업통상부) 2024년 1월 9일 제 14/TB-XNK 호 통보)

기업이 수출가공기업 ("EPE")에서 Non-EPE로 전환한 시 적용 세금정책

2024년 1월 18일, 관세총국은 제296/GDC-TXNK호 OL를 발행하여 EPE에서 Non-EPE로 전환하는 기업의 세금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세금 정책을 안내한다. 주요내용이 아래와 같다:

- **비관세 지역내 건설 및 설치 서비스의 경우:** 관세 당국은 수입품에 대한 VAT를 징수, 관리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 (서비스에 적용되는 VAT에 대한 관리책임이 없다).
- **EPE 건설을 위해 국내에서 구매한 건설 원자재인 화물의 경우:** 기업은 통관 절차를 수행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 **건설 원자재가 아니며 EPE 건설을 위해 국내에서 구매된 화물의 경우:** 기업은 VAT 0%를 적용하기 위해 통관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 **세금이 아직 납부되지 않았고 전환시점에 재고에 남아 있는 수입 자산 및 상품의 경우:** 세금 정책 및 통관 절차가 현행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관세 총국의 2024년 1월 18일 제296/TCHQ-TXNK 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무역 & 관세 지침 문서

외주 가공 계약에 따라 국내 기업이 EPE로 전달하는 물품에 대한 통관 및 수입관세 환급절차에 대한 안내

내국기업이 EPE에게 가공을 의뢰하는 경우 통관절차: 내국기업은 해외에 가공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통관절차를 수행하고, 관세신고서에 "기업의 내부관리번호"를 #&GCPTQ로 신고한다. EPE는 가공을 위해 국내로부터 물품을 수령하고 가공품을 국내로 반환할 때 통관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

관세 신고 모드에 관하여:

- 일정 기간 내에 기계, 장비 및 전문도구를 임시적으로 수출하거나 해외에서 아웃소싱 가공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G61;
- 베트남 기업은 가공을 위해 원자재 및 공급품을 해외업체 또는 EPE에 수출하는 경우: E82;
- 베트남 기업 (EPE 포함)은 해외업체 또는 EPE로부터 가공품을 대수입하를 경우: E41
- 기업은 해외, 비관세 지역, EPE에 화물을 수출하거나 또는 내륙 수출하는 경우: B11.

수입관세 환급 관련: 현행 규정상 국내기업이 외주가공계약에 따라 EPE로부터 받은 가공품은 국내로 수입된 단계에 국내기업에 의해 수입관세를 납부된 후 해외로 또는 비관세구역으로 수출되는 경우에 대한 수입관세 환급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관세총국의 2024년 1월 29일 제467/TCHQ-TXNK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Contact Us



Thomas McClelland
National Tax Leader
+84 28 7101 4333
tmcclelland@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Bui Tuan Minh
Tax Partner
+84 24 7105 0022
mbui@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



Dinh Mai Hanh
Tax Partn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



Vu Thu Nga
Tax Partner
+84 24 7 105 0023
ngavu@deloitte.com



Tat Hong Quan
Tax Partner
+84 28 7101 4341
quantat@deloitte.com



Vu Thu Ha
Tax Partner
+84 24 710 50024
hatvu@deloitte.com



Dang Mai Kim Ngan
Tax Partner
+84 28 710 14351
ngandang@deloitte.com



이상근 회계사
+84 901 197 014
keunslee@deloitte.com



Bob Fletcher
Director, Trade and Customs
+84 28 7101 4398
fletcherbob@deloitte.com

Hanoi Office

15th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Ho Chi Minh City Office

18th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each of which may be referred to or known as Deloitte Vietna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